

2018년 10월 1일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통관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관세청에만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던 기존 절차와 달리,
목재류 수입시 의무적으로 산림청장에게도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합법성 관계서류를 검사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청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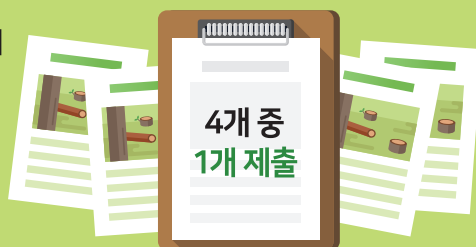


목재펠릿

제출해야 하는 관계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②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FSC, PEFC)



③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④ 합법벌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이외의 서류 중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판매금지, 반송, 파기 등 행정기관의
명령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